

#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5,455,084	20,863,653
일반회계	610,897,713	18,326,931
특별회계	84,557,371	2,536,721
공기업특별회계	65,871,077	1,976,132
공영개발특별회계	12,147,928	364,4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622,176	768,66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100,973	843,029
기타특별회계	18,686,294	560,589
의료급여특별회계	363,893	10,91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6,921	1,108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97,097	14,913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4,897,090	146,913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3,568,602	107,058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603,825	48,11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76,554	17,297
수질개선특별회계	6,305,169	189,15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37,143	25,11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88,93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자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사업(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